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변 중 오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8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1일

3. 제안이유

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과 장학금 지급정지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을 반영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인용조례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나. 지급정지 근거 법령 반영(안 제8조)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→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다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에 따른 용어정비 등(안 제7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개정안은 장학금 지급 및 지급정지에 대한 사항 중 의용소방대 설치

근거 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가 되는 조례의 명칭변경 및 근거 법령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 조례의 명칭이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1조 중 “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반영함.
 - 제7조제3항 중 “제8조의 규정”을 “제8조”로, “없는 한 당해”를 “없으면 해당”으로 정비함.
 -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.
 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에 해당하여 조례안 예고 생략.
- 관련 부서: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」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장학금 지급정지 근거가 되는 조례의 명칭 변경 및 근거 법령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 정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